|  |  |  |
| --- | --- | --- |
| **회사채권의 주권전환 등록**  **관리방법**  공상총국 령 제55호  《회사채권의 주권 전환등록 관리방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공상행정 관리총국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2011년 11월 23일  **제1조** 회사채권의 주권전환 등록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회사법》,《회사등록 관리조례》등 법률과 행정접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회사채권의 주권전환이라 함은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중국경내에 설립한 유한 책임회사나 주식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채권을 회사주권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등록자본을 증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채권의 주권전환 등록으로서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1) 회사 운영에서 채권자가 회사와 발생한 계약채권으로서 채권자가 이미 채권자로서 이행해야 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의 규정이나 회사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민법원에서 채권을 회사주권으로 전환기로 재결한 경우  (4) 회사의 파산 재구성 또는 화해기간에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재구성계획이나 재정에서 인가한 화해협의의 채권을 회사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4조**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을 이미 분할해야 한다.  **제5조** 법률, 행정법규나 국무원의 결정에서 인가를 받아야 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채권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평가 출자금액과 기타 비 통화 출자금액의 합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은 합법적으로 설립한 자산평가기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 출자금액이 당해채권의 평가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채권을 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설립한 자금사정기구에서 사정하여 자금사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자금사정 증명서에는 아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채권 발생일시 및 원인, 계약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계약목적물, 채권의 의무 이행상황 등을 포함한 채권의 기본상황  (2) 평가기구의 명칭, 평가보고서 일련번호, 평가기준일자, 평기가치를 포함한 채권 평가 상황  (3) 채권의 주권전환합의서, 채권자의 상응한 회사채무 면제, 회사의 관련 회계처리를 포함한 채권의 주권전환 상황  (4) 법에 따라 채권의 주권전환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가상황.  **제9조** 채권을 주권으로 전환한 경우 회사에서는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하여 등록자본금 및 실수입자본금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괄 신고하여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0조** 등록변경을 신고하는 회사에서는 《회사등록 관리조례》와 국가 공상 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이 방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황에는 쌍방이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이 당해 규정에 부합함을 인정하는, 채권자와 회사에서 사인한 채권의 주권 전환 인정서  (2) 이 방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상황에는 인민법원의 재결서  (3) 이 방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상황에는 인민법원에서 인가한 회사 재구성계획서나 화해합의 재결서.  회사에서 제출하는 주주(회의)총회 의결에서 채권 출자금액 평가가 《회사법》과 회사정관 규정에 부합함을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회사등록기관에서는 채권의 주권 전환 출자의 출자방식에〝채권 주권전환 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회사등록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채권의 주권전환 등록 시에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접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책임추궁을 한다.  **제13조** 채권자, 회사 및 평가기구, 자금감사기구가《회사법》,《회사등록 관리조례》및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등록기관에서《회사법》,《회사등록 관리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 회사등록기관에서는 채권의 주권전환 회사등록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15조** 회사등록기관에서는 하기 불법행위의 행정처벌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1) 채권자와 회사의 채권의 주권전환 등록 위반행위  (2) 평가기구, 자금사정기구의 채권의 주권 전한 불법행위.  회사등록기관에서 전항의 행정처벌을 받은 평가기구, 자금사정기구 명부를 공시한다.  **제16조**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는 채권의 주권 전환 불법행위와 관련된 채권자, 회사 및 평가기구, 자금사정기구를 즉시 기록하고 기업신용 유별관리를 실시한다.  **제17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비 회사 기업법인이 회사체제로 변경하여 등록하고 채권의 주권전환과 관련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국유자산관리와 관련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公司债权转股权登记**  **管理办法**  工商总局令第55号  　　《公司债权转股权登记管理办法》已经中华人民共和国公司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1月1日起施行。  　　　　　　　　　　　　　　　　　　　　　　　　　　 局长 周伯华　　　　　　　　　　　　　　　　　　　　　　　　二〇一一年十一月二十三日    **第一条** 为规范公司债权转股权登记管理，根据《公司法》、《公司登记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债权转股权，是指债权人以其依法享有的对在中国境内设立的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以下统称公司）的债权，转为公司股权，增加公司注册资本的行为。  **第三条** 债权转股权的登记管理，属于下列情形之一的，适用本办法：  　　（一）公司经营中债权人与公司之间产生的合同之债转为公司股权，债权人已经履行债权所对应的合同义务，且不违反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或者公司章程的禁止性规定；  　　（二）人民法院生效裁判确认的债权转为公司股权；  　　（三）公司破产重整或者和解期间，列入经人民法院批准的重整计划或者裁定认可的和解协议的债权转为公司股权。  **第四条** 用以转为股权的债权有两个以上债权人的，债权人对债权应当已经作出分割。  **第五条** 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债权转股权须经批准的，应当依法经过批准。  **第六条** 债权转股权作价出资金额与其他非货币财产作价出资金额之和，不得高于公司注册资本的百分之七十。  **第七条** 用以转为股权的债权，应当  经依法设立的资产评估机构评估。  　　债权转股权的作价出资金额不得高于该债权的评估值。  **第八条** 债权转股权应当经依法设立的验资机构验资并出具验资证明。  　　验资证明应当包括下列内容：  　　（一）债权的基本情况，包括债权发生时间及原因、合同当事人姓名或者名称、合同标的、债权对应义务的履行情况；  　　（二）债权的评估情况，包括评估机构的名称、评估报告的文号、评估基准日、评估值；  　　（三）债权转股权的完成情况，包括已签订债权转股权协议、债权人免除公司对应债务、公司相关会计处理；  　　（四）债权转股权依法须报经批准的，其批准的情况。  **第九条** 债权转为股权的，公司应当依法向公司登记机关申请办理注册资本和实收资本变更登记。涉及公司其他登记事项变更的，公司应当一并申请办理变更登记。  **第十条** 公司申请变更登记，除按照《公司登记管理条例》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有关企业登记提交材料的规定执行外，还应当分别提交以下材料：  　　（一）属于本办法第三条第（一）项规定情形的，提交债权人和公司签署的债权转股权承诺书，双方应当对用以转为股权的债权符合该项规定作出承诺；  　　（二）属于本办法第三条第（二）项规定情形的，提交人民法院的裁判文书；  　　（三）属于本办法第三条第（三）项规定情形的，提交经人民法院批准的重整计划或者裁定认可的和解协议。  　　公司提交的股东（大）会决议应当确认债权作价出资金额并符合《公司法》和公司章程的规定。  **第十一条** 公司登记机关应当将债权转股权对应出资的出资方式登记为“债权转股权出资”。  **第十二条** 公司登记机关及其工作人员办理债权转股权登记违反法律法规规定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照有关规定追究责任。  **第十三条** 债权人、公司以及承担评估、验资的机构违反《公司法》、《公司登记管理条例》以及本办法规定的，公司登记机关依照《公司法》、《公司登记管理条例》等有关规定处罚。  **第十四条** 债权转股权的公司登记信息，公司登记机关依法予以公开。  **第十五条** 对下列违法行为的行政处罚结果，公司登记机关应当向社会公开：  　　（一）债权人、公司债权转股权登记的违法行为；  　　（二）承担评估、验资的机构因债权转股权登记的违法行为。  　　前款受到行政处罚的承担评估、验资的机构名单，公司登记机关予以公示。  **第十六条** 对涉及债权转股权违法行为的债权人、公司以及承担验资、评估的机构等，工商行政管理机关应当及时予以记录，实施企业信用分类监管。  **第十七条** 本办法规定事项，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十八条** 非公司企业法人改制为公司办理变更登记，涉及债权转为股权的，参照本办法执行。涉及国有资产管理的，按照有关规定办理。  **第十九条** 本办法自2012年1月1日起实施。 |